

2026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23.

서울특별시장

1. 지원기간 : 공고일 ~ 2026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예산 : 16억원
4.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문화산업보증 1종
※ '붙임 1' 참조
 - 한 도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및 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 중소기업 연간 8백만원 한도(~사태 종료 시까지)
* :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모로코, 리비아, 모리타니아, 튀니지, 알제리, 수단, 예맨(총 21개국)
※ 사업개시 이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 '26.4.30(목)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 심사 ⇒

수출보험 · 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하단 기재

※ '붙임2-1(단체보험을 제외한 보험·보증상품)', '붙임2-2(단체보험)' 참조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ON* 또는 팩스 신청

· 본사(중앙지사) (전화 : 1588-3884, 02-399-6851, 팩스 : 02-6234-1411)

· 강남지사 (전화 : 02-551-0473, 팩스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911-6910, 팩스 : 02-6234-1432)

※ K-SURE ON (on.ksure.or.kr) 신청경로 아래 참조

① 단체보험을 제외한 보험 · 보증상품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ON 회원가입(로그인) → 보험/보증료 → 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지원 사업신청 → 신규신청 → 보험료 지원기관 : 서울
특별시청, 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지원] 2026년 서울시청(OO지사) 지원사업
→ 서류 업로드(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등)

② 단체보험

1)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ON 회원가입(로그인) → 보험가입 → 단체보험
→ 단체보험가입 및 신청내역 → 신규신청 → 신청구분 : 단기수출보험(단체
보험) 일반, 보험계약자(보험료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청 → 서류 업로드(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등)

2) 이메일 신청 (담당자 이메일 : gksure@ksure.or.kr)

6.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참조

《 세 부 지원종목 》

□ 수출보험(6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종 목	보 상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선적후)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수출 건별 보험가입)
단기수출보험 (중소Plus+)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중소Plus+)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Plus 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단체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5년도 가입기업은 자동 갱신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종 목	보 상 내 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다이렉트-선적전)	공사 및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보증 상품
수출신용보증(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NEGO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환변동보험(1종)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 문화산업보증(1종) : 문화상품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2026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신청업체현황

기업형태	1. 법인 2. 개인 3. 기타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2025년 수출실적	
지원대상보험종목			
담당자	성명/직위	/	전화번호
	E-mail		FAX번호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 서울특별시 지원예산 범위내(16억원)에서 수출업체별 **3백만원**(단체보험은 별도)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은 2026년 연중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2026년 사업개시 전 발생분)의 수출보험(보증)료 부보 건에 대하여 **2026.4.30(목)까지 신청기업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2026년 서울특별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서울특별시(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2026년 월 일

1. 신청인 기본 정보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형 태		<input type="checkbox"/> 법 인 <input type="checkbox"/> 개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2.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책임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

-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붙임 3

【정보활용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②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